

2025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 접수 계획 공고

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4제1항 및 「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」 제6조에 따라 “인증 재심 접수 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6일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

I. 목 적

-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동물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동물보건사를 양성·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
-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에게 평가인증('25.12.16.) 결과에 대한 인증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

II. 근 거

-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‘인증 재심’ 시행

III. 주요 내용

-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거나,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

IV. 재심 기관

-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(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)

V. 재심 신청 대상

-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

VI. 재심 신청 방법 및 절차

- 「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-87호, 2025. 8. 21. 일부개정)에 따라 시행
 -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인증 재심을 요청하는 문서 제출
- ※ 수신처: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① 신청접수

- (신청방법) 재심 요청 공문(소명 의견, 증빙 및 참고자료 첨부)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*

*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
- (신청기간) 2025. 12. 16.(화) ~ 12. 22.(월)

- (재심의 수수료 납부) 추후 재심 신청 기관에 통보

※ 납부계좌 : 국민은행 294537-04-010279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

* 재심에 필요한 실비용을 재심 신청 기관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

* 납부기한 : 재심의 수수료 확정 후 2일 이내

② 재심

-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평가인증 과정 및 평가결과의 적정성, 재심의 요구서 내용의 사실여부 등 확인·심의

③ 평가인증 공개

- 양성기관 평가인증 재심의 결과는 신청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
- 평가인증 재심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, 신청기관의 보호를 위해 ‘인증불가’ 기관은 비공개 원칙

VII. 사후 관리방안

① 평가인증 기간 중 인증내용 변경시 보고

- 양성기관은 평가인증 기간 중 평가인증 사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(기관명 변경, 대표자 변경 등)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

② 평가인증 취소 사유(수의사법 제16조의4제2항)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
-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
VIII. 2025년도 재심 신청 추진일정

- 신청접수 공고: 2025년 12월 16일(화)
 - 신청접수: 2025년 12월 16일(화) ~ 12월 22일(월)
 - 인증재심위원회 개최: 2025년 12월 24일
 - 재심 결과 통보: 2025년 12월 마지막주
- 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IX. 기타 유의사항

- 재심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관은 재심 진행 과정 중 기관 설립 ·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(기관명 변경, 대표자 변경 등)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보고

X. 담당자 연락처

-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
 - 전화번호: 044-201-2654·2655
-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
 - 전화번호: 031-704-8682